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신정호, 강대호, 강동길,
경만선, 김경우, 김기대,
김용석, 김인제, 김정환,
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
김평남, 노식래, 문장길,
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
서윤기, 성흠제, 송명화,
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
유정희, 이경선, 이광성,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
이준형, 이호대, 임만균,
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
전석기, 채유미, 최 선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다세대 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다세대 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「소규모주택 정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·불량건축물의 기준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이하 "관리지역"이라 한다)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의2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·불량건축물의 기준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이하 "관리지역"이라 한다)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.</u></p>